

## 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

제정 2011. 7. 1 규칙 제1015호  
일부개정 2018. 4. 4 규칙 제1182호  
일부개정 2018. 7. 31 규칙 제1184호(규칙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규칙)  
일부개정 2019. 12. 20 규칙 제1223호  
일부개정 2022. 3. 30 규칙 제1270호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」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9. 12. 20>

제2조(위원회의 설치) ① 「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6조제5항에 따른 평생교육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협의·조정을 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실무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19. 12. 20>

② 지역주민의 학습 접근성 강화 및 권역별 기관·단체 및 주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평생학습 권역별 실무위원회를 둔다. <신설 2019. 12. 20>

③ 지역주민들과 함께 만드는 평생학습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 <신설 2019. 12. 20>

④ 평생학습실무위원회, 평생학습권역별 실무위원회, 축제추진위원회는 시장이 위촉한다. <신설 2019. 12. 20>

[제목개정 2019. 12. 20]

제3조(평생학습실무위원회의 기능) 평생학습실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정례회의를 통해 협의 운영한다. <개정 2018. 7. 31, 2019. 12. 20>

1. 주요 안건을 광명시 평생교육협의회에 상정
2. 평생학습도시 관련 사업 공동개발 및 추진
3. 기관 및 단체의 교육 프로그램 조정 및 협의
4. 기관 및 단체 상호간 교육 프로그램 지원
5. 평생학습 관련 기관단체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방향 논의
6. 평생학습축제 기획
7.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[전문개정 2018. 4. 4]

[제목개정 2019. 12. 20]

제4조(평생학습실무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평생학습원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.

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, 당연직 위원은 평생학습원장, 광명교육지원청 교수학습과장, 권역별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시 평생교육 관계공무원,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평생교육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.

⑤ 위원회의 회의 등은 광명시평생교육협의회에 준하여 운영한다.

[본조신설 2018. 4. 4]

[제목개정 2019. 12. 20]

제5조(평생학습 권역별실무위원회의 기능) 평생학습 권역별실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정례회의를 통해 합의 운영한다.

1. 주요 안건을 광명시 평생학습실무위원회에 상정
2. 마을평생학습 활성화 관련 사업 개발 및 추진
3. 마을 평생학습축제 기획 및 추진
4. 마을 내 교육 프로그램 운영
5.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[본조신설 2019. 12. 20]

제6조(평생학습 권역별실무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개 권역별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2. 3. 30>

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.

[본조신설 2019. 12. 20]

제7조(평생학습축제 추진위원회의 기능) 평생학습축제 추진위원회는 평생학습 축제 기획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.

[본조신설 2019. 12. 20]

제8조(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) 평생학습축제 추진위원회는 축제운영 관계자 및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여 위촉하고, 당해 축제 운영 기간으로 임기를 한정한다. <개정 2022. 3. 30>

[전문개정 2019. 12. 20]

제9조(위원의 임기) ① 평생학습실무위원회 및 평생학습 권역별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12. 20>

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[제목개정 2019. 12. 20]

[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9. 12. 20]

제10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사퇴할 때
2.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
3. 위원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때
4. 그 밖에 위원이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

[제목개정 2019. 12. 20]

[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9. 12. 20]

제11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시의회의원,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[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9. 12. 20]

제12조(강사료 지급기준) 평생학습원 강사료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.

[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9. 12. 20]

제13조(시행세칙) 평생학습원 시설대관을 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한 자격, 대관절차, 대관료 환불 및 감면, 무료대관 등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시행세칙으로 정한다.

[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9. 12. 20]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8. 4. 4 규칙 제1182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8. 7. 31 규칙 제1184호, 규칙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규칙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 <2019. 12. 20 규칙 제1223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2. 3. 30 규칙 제1270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 <개정 2019. 12. 20>

### 강사료 지급 기준

(단위 : 원)

| 분 류  | 강의구분   | 1인 /<br>1시간당          | 비 고 |
|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일반강사 | 강좌 내용, 대상, 횟수, 전문성 정도 등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진행하는 평생학습 강의 | 30,000 -<br>1,000,000 |     |

- 비고 1. 보조강사의 강사료는 해당 강사료 책정액 50%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.
2. 시민공개 특강 등 강사료 책정 기준액 범위에서 초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강사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시장이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.